

공립 초·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

2025. 1.

1 일반 사항

① 계약제교원의 개념

- 가.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·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, 산학겸임교사/명예교사/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, 산학겸임교사/명예교사/강사로 구분
- 나. 기간제교원은 휴직,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,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
- 다. 산학겸임교사/명예교사/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
(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

② 계약제교원의 채용 조건

- 가.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교사로 채용하는 경우
- 나. 특정 사업부서의 계획으로 채용 근거가 있는 경우

③ 제도 운영 목적

- 가.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
 - 정규교사의 결원,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,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
- 나. 기간제교원, 산학겸임교사, 명예교사,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
 - 1)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
 -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
(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)
 - 학생중심, 과정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
(반드시 근거 사업이 있어야 하며,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)